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The Legal Nature and Position of Virtual Currency

박 선 중**
Park, Sun-Jo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가상화폐의 지위 |
| II.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 | IV. 결론 |

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 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투고일 : 2018. 12. 31. / 심사외일 : 2019. 1. 16. / 게재확정일 : 2019. 2. 7.

* 이 글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2018. 12. 7.)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Professor / Ph.D. in Financial Law, College of Law, Soongsil University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가상화폐, 분산원장, 법적성격, 금융투자상품, 규정중심 규제체계, 원칙중심 규제체계, 금융소비자보호

I. 서론

현재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상점에서 현금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덴마크 등 북유럽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현금 없는 사회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¹⁾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현금거래의 비효율성이 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금거래로 발생하는 직접비용만 해도 통상 GDP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결국 기술발전에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²⁾ 현금 없는 사회는 이러한 기존 실물화폐에서의 비효율적인 비용을 제거하여, 통화의 발행과 유통 측면에서 상당 폭의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준다.³⁾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급자족시대에서 분업화시대로 전환되면서 물물교환이 성행하

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2016, 253쪽.

2) 김성훈, “현금 없는 경제 : 의미와 가능성”, KERI Brief 16-28, 한국경제연구원, 2016, 1-14쪽.

3) 박선중/김용재/오석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공동연구보고서, 2018, 12쪽.

게 되었다. 그런데 물물교환에 있어서 교환 목적물 각각의 증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상품을 ‘화폐’로 선정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조개 껍질(조개화폐)에서 점차 금속화폐가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었으나, 점차 금속화폐에서 지폐(종이화폐)로 변모하였다. 금본위제 폐기 이후 통화량의 대폭 증가가 가능해졌고, 각국 정부는 시노리지(seigniorage)⁴⁾의 수혜자가 되었다. 이후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사용상의 편의에 힘입어, 화폐사용자의 선호도는 지폐(실물화폐)에서 플라스틱 카드(신용화폐)로 상당부분 이동하였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정부가 아닌 발행자와 채굴자가 시노리지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화폐와 차별화될 수 있다.

약 10년 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탄생을 세상에 알렸던 당시에는, 가상화폐라는 개념은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가상화폐는 인간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에 침투하였고 상당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4월말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4,288억 달러로 주요국(한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M2⁵⁾대비 0.6% 수준에 불과하다.⁶⁾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가상통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가상통화가 지급수단으로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⁷⁾ CoinMarketCap社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2일 현재, 전 세계에는 2,073種의 Cryptocurrencies가 거래되고 있고, 1일 거래금액은 미국달러화 기준으로 150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이 중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3.7%에 달한다.⁸⁾

비트코인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 수단인 블록체인의 중심 사상인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에 관하여,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때, ‘중앙화 된 시스템’은 농업이 발전되기 시작한 이후인 최근 1만년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기간을 인류는 ‘탈중앙화 된 시스템’에서 살아왔고, 블록체인의 기술에 힘입어 미래에도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4)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익을 의미한다.

5) 총통화 M2는 M1에 정기적금 정기예금과 같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까지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즉 이들 예금은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인출해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면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통 M1을 통화, M2를 총 통화라고 한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인터넷판).

6)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2018, 45쪽, 각주 94); CoinMarketCap社 자료에 따르면, 2018. 12. 2. 현재, 동 시가총액은 1,357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7) 한국은행, 위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47쪽.

8) <<https://coinmarketcap.com/charts>>, 검색일: 2018.12.2.

서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⁹⁾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는 분들은 가상화폐의 발행자나 채굴자 등이 시노리지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각국 정부가 쉽사리 시노리지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는, 정부차원에서 법화(legal tender)를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¹⁰⁾ 장래에 가상화폐의 발전이 얼마만큼 세상을 변화시킬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대국가의 정부가 가지는 힘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탈중앙화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노리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기득권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서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인구 중 약 25억명은 은행계정을 갖지 못한 상황인 바, 그들 중 상당수는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가상화폐를 통한 빈곤탈출 기회제공의 가능성 등 포용적 금융면에서 유용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¹¹⁾

다른 한편,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자금세탁 등 문제, 탈중앙화에 따른 지배구조(governance)의 문제 및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취소불가능의 문제 등이 있다. 반면, 가상화폐 보급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의 자금이체, 보험회사의 스마트계약 및 자본시장 장외거래 활성화 시스템에 도입연구가 진행되는 등 기존의 중앙화된 기관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면도 있다.¹²⁾ 이 글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고,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9) Johann Gevers, "The four pillars of a decentralized society", <https://www.youtube.com/watch?v=8oeiOeDq_Nc>, 검색일: 2018.11.26.

10) 이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 한다. CBDC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박선종/김용재/오석은, 앞의 공동연구보고서, 2018. 3, 5-48쪽 참조.

11) 오정근,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점검 세미나 발표자료, 2018.

12) 블록체인과 금융제도의 충돌 및 융합의 사례연구에 관하여는 박선종,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42권 제4호,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018, 122-127쪽 참조.

II.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

1. 서설

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¹³⁾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¹⁴⁾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① 가상통화가 그 명칭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금융상품이나 물건에 편입시킬 수 없는 새로운 대상이라는 인식의 자세 및 ②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대상을 법률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쉽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¹⁵⁾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법제화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몇 차례 규제방안에 관한 발표만 있을 뿐,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안은 마련에 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돋보이지 않는다.

특히 ‘공개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에 기반한 가상화폐는, 시스템제공자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지배의 제한이나 훼손 없이 존재하고 거래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의 지배력은 비록 사이버공간에 한정하는 것이지만, 소유권과 유사한 독립적인 지배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기존의 사이버재화와는 달리 제공자를 벗어나 물건처럼 전면적으로 대세적인 지배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재화가 되는 법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법정화폐의 대체가능성 주장의 근거로도 볼 수 있다.’¹⁶⁾ 예컨대, 종이에 인쇄된 신문이 아닌 인터넷 신문도 신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3) CoinMarketCap社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 현재 신종코인의 종류는 2,073종으로 증가했다. <www.coinmarketcap.com>, 검색일: 2018.12.1.

14) 한국은행, 앞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1쪽.

15) 오성근, “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증권법학회, 2018, 233쪽.

16) “일반의 온라인콘텐츠에서 유통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 사이버재산의 지배는 특정의 콘텐츠 자체를

는 점, 많은 학자들이 지면에 인쇄된 논문 대신 PDF파일로 인터넷상에 저장된 동일 내용의 논문을 실제 연구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과 비교하면, 가상화폐의 재화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용어의 정리

2.1 법화, 화폐 및 통화

화폐(money)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generally acceptable means of payments)을 의미하고 법화(法貨, legal tender)는 법에 의하여 강제로 통용력이 인정되고 있는 화폐를 의미하며¹⁷⁾, 통화(currenc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통화의 본질적 기능은 교환의 매개라 할 수 있으므로 교환의 매개물로 통화를 정의한다. 현금과 수표(요구불예금)는 모두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물이므로 통화로 정의된다.”¹⁸⁾ 요컨대, 이들 3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법화(legal tender) $\subset$ 화폐(money) $\subset$ 통화(currency)

2.2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및 디지털화폐

IMF는 비트코인 등이 실물 없이 가상으로 존재하고 법화와의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고 표현한 바 있다.¹⁹⁾ ‘가상통화’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용어이고 ‘암호화폐’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용어²⁰⁾인데, 이 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며 그 이용관계도 콘텐츠제공자에 의하여 제한되는 이용관계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사이버재산이 되거나 법정화폐기능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면서도 다른 사이버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정해상,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38-39쪽.

17) 노상재/김상범, 화폐금융론 제5판, 박영사, 2011, 246-247쪽.

18) 김시담, 통화금융론 제3전정판, 법문사, 2001, 13쪽.

19) “Virtual currencies are digital representations of value, issued by private developers and denominated in their own unit of account”, IMF Staff Discussion Note,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Jan., 2016, p. 7,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dn/2016/sdn1603.pdf>>, 검색일: 2018.12.2.

20) 박선중/김용재,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 비교사법학회, 2018, 350쪽.

법화가 아닌 경우는 필요에 따라, 가상화폐, 암호화폐 및 전자화폐로 칭하고 법화인 경우는 디지털화폐로 칭한다.

암호화폐(crypto currency)란 피투피(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는 전자 화폐로 정의된다. 암호화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풀어야 한다.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의 변조가 불가능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중앙 통제 기관이 없이 P2P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 내역을 관리(탈중앙화된 관리체제)한다.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가 2009년 출현된 비트코인(Bitcoin)이다.²¹⁾

한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발행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2012년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발행자가 발행·관리하고(중앙화된 관리체제), 특정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용되며 대부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화폐’라고 정의하였다.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인터넷쿠폰, 모바일 쿠폰, 게임 머니 등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에 해당된다.²²⁾

즉,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대표적 차이는 ‘중앙화된 관리체제’ (발행자의 직접관리)의 유무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는 통상 발행자가 직접 관리하므로 익명성이 약한 반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관리체제’로서 익명성이 강하다.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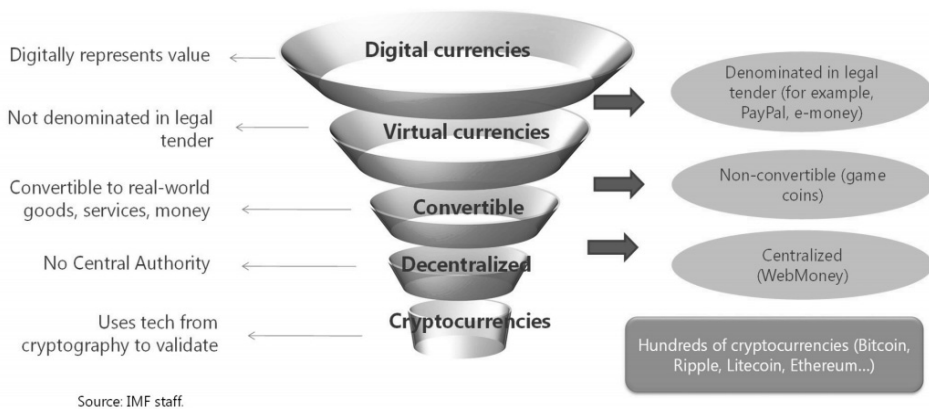
암호화폐(crypto currencies) $\subset$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

다른 한편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법화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2009년 비트코인(bitcoin)등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등장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① 발행 주체의 모호에 따른 책임 주체의 불명 및 ② 공적 안전성(public safety)의 결여에 따른 평판 위험(reputation risk)의 급증 등, 가상화폐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고, 최신의 기술혁신에 부응하여 장기적

21)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2)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으로 실물화폐를 대체함으로써 화폐제도 발전의 축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²³⁾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CBDC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할 예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한국과 일본·독일은 부정적인 반면 스웨덴·이스라엘·두바이·중국 등은 발행을 준비 중에 있어서 대조된다.²⁴⁾



〈그림 1〉 가상화폐의 분류체계

출처 :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Staff Discussion Note, Jan. 2016, p. 8, Figure 1.

한편, <그림 1>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암호화폐(crypto currencies) ⊂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 ⊂ 전자화폐(digital currencies)

2.3 암호자산

최근 국제사회는 비트코인 등이 ①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을 결여하고 있는 데다 ② Currency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반대중에게 화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③ 현실에서

23) Ben S. C. Fung / Hanna Halaburd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 Framework for Assessing Why and How, 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 2016-22 (November 2016); Ben Dyson / Graham Hodgson, Digital Cash: Why Central Banks Should Start Issuing Electronic Money, Positive Money 2016, <<http://positivemoney.org/publications/digital-cash>>, 검색일: 2018.11.18.

24) 이뉴스투데이,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무관심 왜?”(기사), 2018.4.18, <<http://m.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685>>, 검색일: 2018.12.1.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²⁵⁾ 프랑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암호자산(crypto-assets)로 칭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화폐성을 부정하였다. 첫째,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이 극심하여 계산의 단위(unit of account)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가상화폐는 지급의 수단(means of payment) 면에서 법화대비 현저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결여된 바, 가치저장의 수단(store of value)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²⁶⁾(2018년 3월). 이후 IMF도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 칭하고 있다²⁷⁾(2018년 4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 호칭하는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 한편, 우리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5) 한국은행, 앞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i/xv쪽.

26) “Crypto-assets do not meet, or only partially satisfy, the three functions of money

- First, their value fluctuates very significantly, meaning it cannot be used as a unit of account. Consequently, very few prices are expressed in these crypto-assets.
- Second, as a means of payment, crypto-assets are far less effective than fiat currencies, in that (i) their price volatility makes it difficult to use them as a means of payment; (ii) they generate transaction costs that are too high for simple retail payments; and (iii) there is no guarantee of reimbursement in the event of fraud.
- Lastly, their lack of intrinsic value means that they cannot be used as a trusted store of value. Crypto-assets are not based on any underlying fundamentals. They are often a product of hashing power, with no relation to trade store of value)or economic needs, which prevents them from having an intrinsic value.”, Banque de France, “The emergence of bitcoin and other crypto-assets: challenges, risks and outlook”, 「Focus」 No. 16, 5 March 2018, <https://publications.banque-france.fr/sites/default/files/medias/documents/focus-16_2018_03_05_en.pdf>, 검색일: 2018.12.2.

27) “One area, in particular, deserves our intense focus: the potential risks, and regulatory implications, of **crypto-assets**.”, Tobias Adrian(IMF Financial Counsellor and Director of the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Fintech — Building Trust Through Regulation”, IMF Fintech Roundtable, 9 April 20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8/04/11/sp40918-fintech-building-trust-through-regulation>>, 검색일: 2018.12.2.

“**Crypto assets** provid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central banks.”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18, p.5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GFSR/Issues/2018/04/02/Global-Financial-Stability-Report-April-2018>>, 검색일: 2018.12.2.

3. 기존의 논의

3.1 국내의 견해

국내의 초기적 연구로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을 특정하여 ‘금전’, ‘화폐’, ‘증권’, ‘상품’, ‘금융투자상품’ 중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견해가 있다²⁸⁾. 이 견해에 따르면, ① 가상화폐는 부분적으로 금전, 화폐, 상품의 특성을 가지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②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는 볼 수 있다는 점, ③ 따라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복합적 상품’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거래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파생상품이므로 파생상품법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²⁹⁾가 있는 바, 이에 공감한다. 이후 몇몇의 관련된 연구가 있으나,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를 명쾌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어찌보면 화폐와 관련된 현행 법규정이 제정될 당시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개념을 상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다.³⁰⁾ 대법원의 이 판단은 향후 비트코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상당수 가상화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국외의 견해

미국 CFTC(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비트코인과 여타 가상화폐를 Commodity Exchange Act의 규제대상이 되는 상품(commodity)로 판단하였다.³¹⁾ 한편,

28) “비트코인은 지급수단의 일종이지,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증권·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다만,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 등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비트코인 자체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 393-397쪽.

29) 김홍기, 위의 논문, 396쪽.

30)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1) “CFTC Holds that Bitcoin and Other Virtual Currencies Are a Commodity Covered by the Commodity Exchange Act”, CFTC Press Release No. 7231-15, 15 Sep. 2015,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pr7231-15>>.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국세청)는 과세목적상,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하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산거래는 과세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³²⁾ 한편, FRB의 Yellen 전 의장은 가상화폐는 안정적인 가치저장수단이 아니며, 법정화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2017. 12. 13. 기자회견).³³⁾

ECB의 Yves Mersch 이사는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개·가치의 척도·가치의 저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화폐가 아니며,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지급수단 보다 열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³⁴⁾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가상화폐가 당초 지급결제용으로 고안되었지만, 현재에는 상당부분 투자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⁵⁾ 동 은행 Carry 총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하면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화에 비하여 느리고 비싸다는 견해를 밝혔다.³⁶⁾

일본은 2017년 4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법화로 인정하였다.³⁷⁾ 그러나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Kuroda 총재는 비트코인은 지급 또는 청산·결제수단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제수단이 아닌 투자자산이며 엔화와 같은 합법적인 통화를 위협할 일을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찬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합법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천명하였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Poloz 총재는 가상화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치저장기능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기능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서 화폐가 아니라고 밝혔다. 독일 중앙은행 Weidmann 총재는 비트코인은 처리 지연, 가치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이 어려우며, 가격변동성이 심해 투기수단에 가깝다고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de Galhau 총재는 비트코

검색일: 2018.12.1.

32) “For federal tax purposes,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property. General tax principles applicable to property transactions apply to transactions using virtual currency”, <<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 검색일: 2018.12.1.

33) 한국은행, 앞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72쪽.

34) 한국은행, 위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72쪽.

35) “A digital currency is an asset that only exists electronically. Digit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were designed to be used to make payments, but today many digital currencies are held as speculative assets by investors who hope their value will rise”, <<https://www.bankofengland.co.uk/research/digital-currencies>>, 검색일: 2018.12.2.

36) 한국은행, 위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72쪽.

37) Japan Declares Bitcoin as Legal Tender states “Bitcoin has now been declared as a legal tender or payment method in Japan, effective from April 1st 2017”, <<https://seekingalpha.com/article/4133681-bitcoin-legal-tender-japan>>, 검색일: 2018.12.2.

인은 화폐가 아닌 투기자산이라고 밝혔다.³⁸⁾

3.3 소결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중앙은행으로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 화폐입니다.”³⁹⁾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논의 전개의 방향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 호칭하는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 한편, 우리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물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재로서는 가치의 척도(store of value), 교환의 수단(medium of exchange) 및 계산의 단위(unit of account)등 화폐의 기본적인 성질을, 법화와 동일한 수준으로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화폐로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페트로(petr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 법화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여타 국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경우가 된다면, 한국은행법 제47조⁴⁰⁾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자리한 모습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적 성질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가 미비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면

38) 각국 은행 총재의 가상화폐 관련 견해는 한국은행, 앞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72쪽 참조.

39) 비트코인 홈페이지, <<https://bitcoin.org/ko/>>

40)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Coin Market Cap 社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2일 기준 전세계 202개 거래소(암호화폐 취급소)에서 시가총액 1,357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매매되고 있는 바, 이는 가상화폐의 금융투자상품적 성질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등 가상화폐에 관한 강한 규제방침을 정한 내용의 골자는 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및 ②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전면차단”이다.⁴¹⁾ 이 규제의 핵심은, ICO라는 형태를 통하여 IPO와 유사한 자금의 공모행위에 관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주 목적은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ICO라는 행위를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지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란은행의 인식(각주 34)은 공감이 간다. 기실, 가상화폐의 지위 중 금융투자상품적 성질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각국의 ‘거래소(exchange)’를 통해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를 외치는 가상화폐들도 거의 예외 없이 ‘신중앙화’로 보이는 자칭 암호화폐 거래소(암호화폐 취급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2. 지급결제수단의 지위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상거래 등에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수 및 금액에 대한 통계는 찾을 수 없다.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상거래 등에서 P2P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의 지갑 간 이체가 이루어지는데, 2017년 중 동 건수는 일평균 28.5만건(전세계 기준)으로 동 기간 국내 일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약 5,291만건의 0.5% 수준에 불과하다.⁴²⁾

더욱이 지불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만으로 화폐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쌀, 조개껍질 등도 지불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화폐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화폐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그 자체가 재화에 대한 교환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치척도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신의 시장가격이 급등락 하는

41) 금융위원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보도자료, 2017. 9. 29.

42) 한국은행, 앞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80쪽.

대상이 될 뿐 화폐로서의 중요한 가치조절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상의 의미에서 화폐의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한다⁴³⁾는 견해도 있다.

현재로서는 가상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지위는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⁴⁴⁾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거래수단(unit of account)으로 채택하도록 지시⁴⁵⁾했다는 점은 제한적이거나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교환가치수단의 지위

물물교환에 있어서 교환 목적물 각각의 등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상품을 ‘화폐’로 선정하게 된 것은 화폐의 ‘교환가치수단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 화폐의 유용성은 교환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범용적 교환가치는 현재로서는 각국 법화(fiat money)에 비하여 열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장래에 양자의 교환가치가 대등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례로, 2018년 12월 현재 가상화폐 ATM(automatic teller machine)의 전 세계 75개국에 4,050개에 달하고 있는데⁴⁶⁾, 2018년 초 58개국 1,485개에 불과⁴⁷⁾하였음을 감안하면, 증가속도가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ICO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의 교환가치수단의 지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일반적인 법정화폐의 특징 중 교환가치수단의 특징은 대표하는 것은 ICO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한창 호황기였던 2017년에 비해, 시세가 폭락한 2018년에 ICO는 증가하였는데, “우리가 가상현실, 가상세계에서도 일을 하고 충분히 재미를 찾으며 가치를

43) 서봉석,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제11권 제1호, 한국은행법학회, 2018, 69쪽.

44) 한국은행, 앞의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xiv/xv쪽.

45) 뉴스1, “위기의 마두로, 은행들에 암호화폐 ‘페트로’ 쓰라”, <<http://news1.kr/articles/?3410739>>, 검색일: 2018.12.1.

46) 출처 : Coin ATM Radar, <<https://coinatmradar.com>>, 검색일: 2018.12.1.

47) 오정근, 앞의 발표자료.

만들 수 있듯이, 분산화된 세상에서 담보를 잡을 수 있고 가치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례는 계속 등장⁴⁸⁾한다며48), 가상통화의 담보권 설정 등 교환가치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표 1>에 따르면 2018년도 ICO금액은 200억 불을 초과하였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3년 ICO 모집 금액이 1백만 불에도 못 미쳤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의 신장으로 보인다.

〈표 1〉 가상화폐 연도별 ICO 금액 및 건수

연도	금액 (미국달러)	건수
2013	616,800	2
2014	29,924,600	6
2015	8,853,840	7
2016	99,622,741	52
2017	6,602,002,746	455
2018	20,227,125,739	970

* 2018년도는 12월2일 기준임.

자료 : Coinschedule社

<<https://www.coinschedule.com/stats.html?year=2018>>, 검색일: 2018.12.2.

IV. 결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가사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

48) 벤자민 라무, “블록체인 투자자, 단순 수익성 넘어 더 큰 꿈 있다”, EBF 2018(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 2018), 2018. 11. 28. <<https://m.news.naver.com/newspaper/read.nhn?oid=018&aid=0004261974&page=1&date=20181129>>, 검색일: 2018.12.1.

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도 IRS는 과세목적에 국한하여 Property로 판단하였고, CFTC는 Bitcoin Futures가 상장되는 상황이니 commodity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화로 인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시담, 통화금융론 제3전정판, 법문사, 2001.

노상채/김상범, 화폐금융론 제5판, 박영사, 2011.

2. 학술지

김흥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 377-431쪽.

박선중,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42권 제4호,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018, 133-151쪽.

박선중/김용재,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 비교사법학회, 2018, 349-392쪽.

서봉석,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은행법학회, 2018, 61-90쪽.

오성근, “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8, 233-277쪽.

정해상,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33-65쪽.

3. 자료집

김성훈,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KERI Brief 16-28, 한국경제연구원, 2016.

금융위원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보도자료, 2017. 9. 29.

박선중/김용재/오석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연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공동연구보고서, 2018.

오정근,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가상통화 규제·세제·

- 회계 분야 이슈점검 세미나 발표자료, 2018.
-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연구자료, 2018.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2016.
- Banque de France, “The emergence of bitcoin and other crypto-assets: challenges, risks and outlook”, 「Focus」 No. 16, 5 March 2018.
- Ben S. C. Fung / Hanna Halaburd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 Framework for Assessing Why and How, 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 2016-22, November 2016.
- Ben Dyson / Graham Hodgson, Digital Cash: Why Central Banks Should Start ssuing Electronic Money, Positive Money, 2016.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18.
- Tobias Adrian(IMF Financial Counsellor and Director of the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Fintech—Building Trust Through Regulation, IMF Fintech Roundtable, 9 April 2018.

[Abstract]

The Legal Nature and Position of Virtual Currency

Park, Sun-Jong*

Almost every country struggles to define and establish rules for virtual currency, although virtual currency is now ubiquitous in the financial market to some extent. It is because Bitcoins and Alt-Coins of 1,600 types, which are based on distributed ledger and encryption technology, are not easy to define in a single concept.

Various research subjects exist, including virtual currency's increasing role in economic activities, with a couple of problems that follow it. In short, central banks of major countries have keenly watched the payment and settlement function in virtual currencies. Bitcoin, the first virtual currency, itself insists that **"Bitcoin is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and a new kind of money."** Nevertheless, recently the governors of major central banks regard Bitcoin as neither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nor a new kind of money. However, it seems that criticisms on virtual currency being speculative investment has increased compared to earlier times.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existing laws. It is because existing laws were not written with virtual currency taken into account. The concerns against virtual currency replacing the existing legal currency seems to have weakened than before. In contrast, virtual currency's function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as grown. Nevertheless, there are little proper regulations on these functions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It seems impractical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the ground of existing rule-based system. It is because even if we succeed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one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existing rule, this does not guarantee the same for the next one. Therefore,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seems t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t this point, virtual currencies stand out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 Korea.

* Professor/Ph.D. in Financial Law, College of Law, Soongsil University

Since virtual currency is actively traded fo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 investors. Firstly,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ust announce the principles of regulation on virtual currency, and secondly,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new legislation on virtual currency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y.

[Key Words] virtual currency, distributed ledger, legal natur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rule-based regulation system,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